



카카오뱅크 미니(mini) 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정의)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카카오뱅크”의 “mini 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카카오뱅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mini”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② “카드”는 “mini”의 잔액 내에서 카드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입니다.
- ③ “회원”은 카카오뱅크에 “mini”를 개설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카오뱅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④ “영업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제 2 조 (카드 발급)

- ① “mini”를 보유한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 세 미만의 자가 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며,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카카오뱅크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원으로부터 카드 신청을 받은 경우,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 ③ 카드발급은 고객별로 1 장만 가능합니다.

제 3 조 (카드 관리 및 이용)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결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카오뱅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에 표시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카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카드 발급 수수료)

-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카드발급 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 종류 및 발급 사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게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 6 조 (카드 이용한도)

-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 (1 회, 일, 월 한도 등)는 카카오뱅크가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mini"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기 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카오뱅크에 승인 요청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이용금액, 이용 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구매한도와 관련된 통지는 회원이 카카오뱅크에 지정한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 7 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카카오뱅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 시마다 카카오뱅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입력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합니다.
- ③ 회원은 제 1 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mini"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mini"의 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가 이하 6 호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경우 회원이 카카오뱅크에 지정한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용 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제한(정지) 즉시 알려 드립니다.

1. 비밀번호 오류 입력 횟수 3 회 이상 초과
2. 인출 한도 또는 카드 이용한도 초과, "mini"의 잔액 부족
3. "mini"가 사고신고 또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의 "mini"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카오뱅크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만 14 세 미만의 회원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유효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만 14 세 미만의 회원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유효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카카오뱅크는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전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카드의 국내 이용)

- ① 회원이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mini"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 마감·결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산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및 "mini" 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에서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카드의 자동화기기 이용)

- ① 회원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편의점 및 CD 공동 온라인망 참가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없이 카드를 이용하여 "mini"의 입금 또는 출금, 잔액조회 및 기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카카오뱅크 및 참가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 2 부를 작성하여 1 부는 은행의 입금의뢰서 또는 지급청구서로 갈음하고 1 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단,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의 1 회 및 1 일 이용금액의 한도는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④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카카오뱅크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⑤ 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거래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카카오뱅크 및 참가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⑥ 자동화기기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카카오뱅크 및 참가 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의 비밀번호 오류 입력 횟수 3 회 이상 초과, 카드의 지급제한, 사고신고 접수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⑧ 카드 거래시 카카오뱅크 및 참가은행 간 업무 처리절차에 의한 카드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카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카드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카오뱅크의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으로부터 제 1 항에 따른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 전 이후부터 제 3 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③ 회원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책임(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제 3 자(가족, 동거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약관에서 동일합니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7.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카오뱅크 또는 업무대행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 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카오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 12 조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점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카카오뱅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① 회원은 제 2 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카오뱅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의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뱅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모바일 앱, 전자우편 (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③ 회원은 카카오뱅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카오뱅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카오뱅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 14 조 (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통보)

- ①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 •활용에 동의 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이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 및 연체내용 및 연체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기 거래상의 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카카오뱅크 등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2. 카드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④ 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 5 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약관변경 승인)

①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변경되는 약관을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카카오뱅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6 조 (약관 위반 시의 책임)

카카오뱅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그 외 개별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 년 7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전·후 대비표

대상 약관: 카카오뱅크 미니(mini)카드 개인회원 이용약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조 (카드 발급) ① “mini”를 보유한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 세 미만의 고객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mini 이용약관에 따라 카드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회원이 카카오뱅크에 지정한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③항 생략	제 2 조 (카드 발급) ① “mini”를 보유한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 세 미만의 자가 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며,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카카오뱅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③항 (현행과 같음)	- 수정: 만 14 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사항 추가(1 항) - 수정: 발급 가능 연령 제한 문구 삭제(2 항)
제 8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mini”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mini”의 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가 이하 5 호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경우 회원이 카카오뱅크에 지정한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 8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mini”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mini”의 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가 이하 6 호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경우 회원이 카카오뱅크에 지정한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의 PUSH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용 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제한(정지) 즉시 알려드립니다.	- 수정: 카드의 이용제한 사실에 대한 안내 시점 명확화(1 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5 호 생략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호 생략 ③~④항 생략	1~5 호 (현행과 같음) 6. 만 14 세 미만의 회원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유효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호 (현행과 같음) 3. 만 14 세 미만의 회원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유효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③~④항 (현행과 같음)	- 신설: 카드의 이용제한 사유 추가(1 항 6 호) - 신설: 카드의 해지 사유 추가 (2 항 3 호)
(신 설)	부 칙 이 약관은 2023 년 7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문구 부칙으로 추가